

부산지방법원 2022. 6. 10 선고 2021가단32844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B, C, D

피 고 E

변 론 종 결 2022. 4. 22.

판 결 선 고 2022. 6. 10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 피고와 F 사이에 2020. 11. 12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는 F에게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20. 11. 12. 접수 제714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F는 원고와 사이에 2016. 5. 13.경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20. 1. 13.경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.

나. 원고는 F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차전221328호로 위 각 약정에 따른 2021. 5. 24. 기준 원리금 등의 합계 28,885,9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, 위 지급명령은 2021. 8. 10. 확정되었다.

다. 한편, F는 2020. 11. 12.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G호(이하 '이 사건 아파트'라 한다) 중 1/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(이하 '이 사건 증여'라 한다)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5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 주장의 요지

이 사건 증여계약은 F가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F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/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판 단

가. 관련 법리

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,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, 다만 위와 같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,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

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(대법원 2000. 7. 28. 선고 2000다14101 판결 등 참조).

나. 인정사실

- 1) F와 피고는 1987. 2. 9.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. F와 피고는 2016. 11. 14.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/2 지분에 관하여 같은 해 9. 7. 매매(거래가액 1억 7,000만 원)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- 2) F는 ‘피고와 협의이혼을 하고 이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/2 지분을 이전해 주기로’ 피고와 합의하고, 2020. 11. 12.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위 지분을 이전해 주었다.
- 3) 피고와 F는 2020. 11. 23. 부산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고 2021. 1. 28.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2021. 1. 29.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.
- 4)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H 주식회사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1,770만 원, 채무자 F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. 피고는 위 이혼 무렵부터 위 근저당권부 원리금채무를 분할변제하고 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5호증, 을 제1, 2, 7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다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F는 약 34년간 혼인생활을 한 피고에게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이 사건 아파트 중 1/2 지분을 양도하였는데, 당시 위 지분의 가액은 8,500만 원(= 1억 7,000만 원 × 1/2) 정도였고 위 지분에 해당하는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를 고려한 실질적인 가액은 이보다 낮았다고 봄이 타당하다.

여기에, 피고가 양도받은 위 지분은 재산분할로 양도된 부분과 위자료로 양도된 부분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재산분할의 성격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,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F가 피고에게 위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공동담보를

감소시켰더라도, 위 지분의 양도가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위 지분의 양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.

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4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신민석

별지